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.
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입니다.
-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현재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
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·위치·면적·거래품목과
휴업일·영업시간은
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
우리 시의회가 의결하는 조례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-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치 · 면적 · 거래품목에 대해
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
현재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현행화하는 한편,

- 휴업일의 경우에는
매월 1회의 비정기 휴업일을 추가함으로써
주 6일 동안 장시간 야간근무를 이어가고 있는
유통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일부나마 개선하고,
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
구인난과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
향후에도 기능을 유지 ·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- 위원 여러분!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,
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
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
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!